새로운 도약,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

2026. 9. 22.

심사결과보고

의안 번호	의 안 명	심사결과	비고
4608	가로등 현수기 운영·관리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	원안가결	

대전광역시서구의회
도시건설위원회

의안 번호	4608

가로등 현수기 운영 · 관리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도시건설위원회

가로등 현수기 운영·관리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9. 22.
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년 8월 27일 서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

다. 상정 및 심사일자: 제299회 서구의회(제1차 정례회) 회기 중
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정·심사·의결(2026. 9. 9.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가로등 현수기의 체계적·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민간위탁의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고, 「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가로등 현수기의 운영·관리 전반 업무를 위탁하고자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

○ 위탁기간은 2027. 1. 1.부터 2029. 12. 31.까지(3년간)이며, 위탁 수수료는 없으며 대행수수료로 대체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(전문위원: 김재중)

가. 본 **동의안**은 현재 **(사)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**에서 위탁 중에 있는 우리 구 가로등 현수기 운영·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**2026. 12. 31. 만료**됨에 따라, 재위탁 추진에 앞서 「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**의회 동의**를 구하는 사항임.

나. 주요 내용은 가로등 현수기의 운영·관리 전반 업무를 위탁하고자 **수탁기관 공개모집** 후 **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** 심의를 통해 선정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**2027. 1. 1.부터 2029. 12. 31.까지(3년간)**이며, 위탁 수수료는 없으며 **대행수수료로 대체**할 계획임.

다. 가로등 현수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해당 동의안은 **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**되나, **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투명하게 선정**하고 수탁기간 중 수탁기관에 대한 **지속적인 지도·감독**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답변 요지: 생 략

5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6. 소 수 의 견: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 음

참고자료1

관내 주요 도로 및 가로등 현수기 현황

도로명	구간	구 간 명	가로등 현수기	비 고
합 계		22개 도로 44개 구간	1,361	
1. 갑천도시 고속도로	1-1	대덕대교네거리 ~ 갑천네거리	36	
	1-2	갑천네거리 ~ 갑천대교네거리	45	
	1-3	갑천대교네거리 ~ 만년교네거리	30	
2. 둔산대로	2-1	갑천네거리 ~ 만년네거리	37	
	2-2	만년네거리 ~ 평송네거리	41	
3. 한밭대로	3-1	갑천대교네거리 ~ 보라매네거리	44	
	3-2	샘머리네거리 ~ 한밭대교네거리	34	
4. 문예로	4-1	둔산대공원삼거리 ~ 모정네거리	25	
	4-2	모정네거리 ~ 한가람네거리	27	
5. 계룡로	5-1	만년교네거리 ~ 대전일보사	42	
	5-2	대전일보사 ~ 큰마을네거리	28	
	5-3	큰마을네거리 ~ 탄방네거리	33	
6. 대덕대로	6-1	대덕대교네거리 ~ 만년네거리	11	
	6-2	만년네거리 ~ 정부청사역네거리	17	
	6-3	정부청사역네거리 ~ 큰마을네거리	16	
	6-4	큰마을네거리 ~ 안골네거리	23	
7. 도안동로	7-1	옥녀봉네거리 ~ 도안중삼거리	63	
	7-2	도안중삼거리 ~ 가수원네거리	48	
8. 유등로	8-1	둔산대교 앞 ~ 한밭대교4	59	
	8-2	한밭대교4 ~ 남선공원4	56	
9. 청사로	9-1	수정삼거리 ~ 둥지네거리	5	
	9-2	선사유적네거리 ~ 은뜰삼거리	26	
10. 문정로	10-1	수정삼거리 ~ 공작네거리	30	
	10-2	공작네거리 ~ 숭어리샘네거리	46	
11. 둔산남로	11-1	삼천교네거리 ~ 까치네거리	30	
12. 동서대로	12-1	목원대네거리 ~ 도솔터널	28	
	12-2	도솔터널 ~ 변동오거리	54	
13. 배재로	13-1	안골네거리 ~ 배재대입구네거리	30	
	13-2	배재대입구네거리 ~ 고가도로 끝	26	
14. 혜천로	14-1	고가도로 끝 ~ 버드내다리	22	
15. 도산로	15-1	남선공원네거리 ~ 용문역네거리	29	
16. 신갈마로	16-1	도솔네거리 ~ 갈마프라자삼거리	35	
	16-2	갈마프라자삼거리 ~ 갈마네거리	33	
17. 갈마로	17-1	갈마삼거리 ~ 모도리국밥 앞 삼거리	29	
18. 둔산로	18-1	시교육청네거리 ~ 둔산여고네거리	15	
	18-2	보라삼거리 ~ 시청역네거리	29	
19. 갈마역로	19-1	둔산여고네거리 ~ 황실네거리	27	
20. 문예로	20-1	국화삼거리 ~ 검찰청네거리	12	
21. 둔산북로	21-1	문정중학교 앞 ~ 경찰청네거리	30	
22. 계백로	22-1	유등교 ~ 도마삼거리	43	
	22-2	도마삼거리 ~ 가수원네거리	43	
	22-3	가수원네거리 ~ 가수원동행정복지센터네거리	24	

참고자료2

관련 법 및 조례

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

제8조(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위탁 등) ①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, 가로등 현수기(이하 "지정게시대 등"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 등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)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(그 장을 포함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· 검사 · 검정 ·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·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

제5조(위탁 적정성 검토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그 밖에 공공 ·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의회 동의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(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 받는 사무로서 그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

2.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사무로서 수탁기관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
3.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
4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
5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
6. 재난 ·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사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위탁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
2. 소요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
3. 위탁시설 또는 그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
4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

제7조(위탁 동의안)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의 내용
4. 위탁시설의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위탁기간
6.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8. 제5조에 따른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9.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(재계약인 경우에 한함)
10. 그 밖에 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구청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. 다만, 위탁사무의 목적 · 성질 ·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.

1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· 기구 · 장비 · 시설 및 기술 보유 수준
2.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 능력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4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
5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대전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고 한다)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2. 제11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구 소속 공무원
2.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(위탁사무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)
3. 위탁사무와 관련된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
4. 그 밖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수탁대상기관에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위탁사무와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.

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“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 · 성질 ·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 · 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· 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

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“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“민간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